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15-14
------	-------

제출일자 : 2015. 02.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 명

-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제안 이유

-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3.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개요

(1) 구역현황

- 위 치 : 마포구 대흥동 338번지 일원
 - 면 적 : 18,000m²
 - 추진경위
 - 2006. 03. 23 : 정비예정구역지정(시 고시 제2006-95호)
 - 2009. 07. 30 : 추진위원회 승인
 - 2013. 02. 27 :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접수
 - 2013. 08. 27 : 추진위원회승인 취소(구 고시 제2013-161호)
 - 2013. 11. 14 :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 2014. 06. 27 : 판결선고(우리구 승소)
 - 2014. 12. 18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 ※ 공람기간 : 2014. 12. 18 ~ 2015. 1. 19일까지

(2)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내용

구역명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비고
대흥15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000	210	50	평균층수 15	1	

(3) 주민 공람공고 결과

- 주민공람 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4) 구역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일(2013.2.27)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119명 중 61명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동의율 51.26%)를 제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4. 향후 추진절차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구→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 결정 및 고시(서울시)
※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정비예정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 됨.

붙임

위치도



정비에정구역도

